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85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진성준ㆍ허 영ㆍ박해철

김주영 · 강선우 · 양문석

위성곤 • 정을호 • 정태호

임광현 • 문진석 • 김태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환경성질환의 지정·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
	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
	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
	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